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태근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공동전기료 지원방법 규정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 -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에 의거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공동전기료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시설물 명시
- 공동전기료 지원방법을 규정(안 제4조)
 -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

○ 검토 결과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 규정 마련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황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황상3주공 아파트는 10개동에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41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, 185세대는 차상위계층, 모·부자가정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음
- 다만,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가 지원될 경우 관내 장기 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나, 지원대상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 명시하여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자활의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